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ume 12, Number 1, Mar, 2010: pp. 35~54
통상정보연구 제12권 1호 (2010년 3월 27일)

논문투고일자 : 2010. 2. 20.
심사(수정)일 : 2010. 3. 15.
게재확정일자 : 2010. 3. 16.

국제 전자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책임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과 미국의 전자금융제도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bank's responsibilities in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U.S.A-

이병렬(Byeong-Ryul Lee)
부산대 무역국제학부 강사

목 차

Ⅰ. 서 론
Ⅱ. 양 국의 전자결제화의 추세와 제도구축
Ⅲ. 손실할당에 따른 은행의 책임
Ⅳ. 은행의 면책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d the bank's responsibilities in electronic payment system between Korea and U.S.A. In order to complete my research object, I used Article 4A of the U.C.C. and EFTA of 1978 and by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of Korea as a analytic instruments. I also adapted America's various regulations to regulate concerned parties(banks). The system of this article is going to display as fellows;

First, I presented recent trend and legal stabilities of electronic payment in this article.

Second, I focuses on the allocation of risk of loss caused by ambiguous term in payment orders that do not express the subjective intention of the senders. I also did analyze the solution procession of error occurring in course of send of payment order.

Third, In any action which involves a customers's liability for an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the burden of proof is upon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show that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was authorized.

Forth, Customers have to report the error and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after awaring of it. Then bank will be liable for such a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But If customer's failure to report, the bank has exemptions.

Lastly, In order to prevent or detect the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bank will agree with custom to establish a commercially reasonable security procedure, while bank has duties to notify in order to decrease the loss resulted from unauthorized payment order in korea law.

Key Words : EFT, errors, responsibilities, unauthorized payment order, bank

Ⅰ. 서 론

국제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9년 전자자금이체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477만 건 그리고 금액은 29조 4,418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각 각 43.2%와 28.9%가 증가하여 건수별로는 2003년, 금액기준으로는 2004년 이래 각각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전자어음의 2009년 발행규모는 총 237,634건으로 일평균 935.6건에 534.5억원으로 총 발행금액은 13조 5,774억원으로서 전년에 비해 건수는 193,285건(435.8%) 그리고 금액은 9조 98억원(197.3%)이 증가하여 증가세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9년 중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 및 금액(일평균 기준)은 2,800만건 및 금액기준으로는 29조 4천 5백 여 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4.8% 및 28.9% 증가한 실정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도 전통적으로 지급결제수단의 주류역할을 해왔던 수표 및 현금지급이 1990년대 이후 전자지급수단으로 그 이용이 대체되면서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증가율이 더욱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먼저 소액 소비자지급결제에서는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주로 이용해 왔던 종이수표 결제방식이 자동정산소(Automated Clearing House; ACH)을 이용한 전자결제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03년에는 수표에서 자동정산소지급으로의 전환율이 1%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이후부터는 매년 8%를 넘어서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또한 거액 상업적 전자자금결제분야에서는 미 연방준비은행 전자자금이체시스템(Federal Reserve Wire Transfer Network; Fedwire)를 통하여 결제되고 있는 금액이 2002년 일평균 1조 6천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에는 미화 3조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성장률이 2000년 이후 1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자결제시스템의 이용이 증가하면 할수록 지금까지 수표 및 현금결제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과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시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원만한 전자금융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한국은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전자금융거래당사자를 규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 및 「규정 E」와 1989년 미국통일상법전 제4A편 및 「규정 J」를 제정하여 당사자들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1st Century Act(Check 21)를 2003년 10월에 서명하고 2004년 10월부터 발효시킴으로서 '소위 대체수표(substitute check)'에 최초수표(original check)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수표결제에 참여하는 지급은행 및 추심은행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전혀 새로운 금융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과 미국의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과 통일상법전 제4A편을 연구범위로 제한하여 양국의 결제메카니즘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책임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책임에 관한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학자로서는 김자봉(2006), 김제한(2006), 한정미(2007), 김인석(2008), 정찬형(2008) 등이 있으며, 미국측 학자로서는 담 스테이터(Darmstadter, H., 2007), 코랄과 웨이카트(Croal, M & Weikart, 2008), 라리와 브라이언(Lary Lawrence & Bryan D. Hull, 2009) 등 깊이 연구하고 있다. 본 고에서 양국 제도를 비교·연구하는 목적은 한국과 미국간에 국제무역의 증가로 인한 양국의 금융 및 결제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양국의 결제메카니즘 참여자들에게 시장혼란을 최소화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함이다. 또한 전통적인 결제시스템을 전자결제시스템이 점점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상거래의 주류결제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양 국의 전자결제화의 추세와 제도구축

1. 최근 결제환경의 변화와 특징

미국의 최근 지급결제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수표, 자동정산원, 추심카드, 신용카드 및 전자자금이체와 같은 비 현금지급수단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비 현금지급 건수는 810억 건에서 930억 건으로 년 평균 증가율 4.5%, 동기간 비 현금지급 총 금액은 미화 68조 달러에서 미화 76조 달러로, 년 평균 3.9%까지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동 기간 전체 지급규모의 증가율을 앞서고 있다.[1)]

둘째 지급처리방식 자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미국의 지급방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종이수표방식이 전자결제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결제를 위해서 단 한차례 수표지급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은행을 통한 2개의 온라인 형태의 자동정산원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과거의 지급처리방식은 여러 개의 지급이 하나의 수표결제로 통합되었지만 현재에는 개별 자동정산원지급으로 대체되어가고 있

1) 이의 원인으로서는 소비자의 소액지급이 비 현금지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비 현금결제방식은 경제 및 사회적인 원인으로 1970년대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소득 및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물품소비가 증가하면서 대금지급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비현금형태의 지급수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http://www.federalreserve.gov/pubs/buiietin, 7 Feb., 2010.

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수표 정산방식의 변화는 '21세기법'이 2004년 10월 발효되면서 가능해졌다.[2] 그 후 동 방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초반에는 모든 은행 간에 결제되는 수표의 57%가 종이수표였고 43%만이 전자적인 방법 또는 대체수표로 지급은행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2008년 말에는 연방준비은행을 통하여 은행에 제시된 수표의 약 53%가 전자적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최근 미국의 결제제도의 뚜렷한 특징은 비 현금지금수단 중 전자결제수단의 약진을 들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주요한 전자결제수단으로서는 전자선지급카드(Electronic Prepaid Card), 온라인 어음지급(on-line bill payment), 개인 간 인터넷지급(person-to-person internet payment), 무 접촉 지급(contactless payment) 및 자동정산원(ACH)카드 지급방식을 들 수 있다.[3]

넷째 자동정산원지급 중 추심이체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자동정산원은 신용이체와 추심이체 두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결제를 이행한다. 신용이체의 대표적인 사례가 임금지급인데 고용주의 은행계정에서 수취인인 종업원의 계정으로 직접 자금이 이동한다. 추심이체의 처리과정은 수표처리과정과 유사한데 주기적으로 고객의 은행계정에서 자금이 출금되는 보험 및 모기지(mortgage)회사에서 주로 이용한다. 자동정산원 결제방식 중 지금까지는 신용이체가 추심이체를 초월하였지만 2003년부터는 추심이체의 증가율이 신용이체의 증가율보다 앞서서 년 평균 27%이상 증가하였다. 추심이체의 성장의 절반이상은 전환된 수표(converted check)에서 발생되었다. 전환수표방식중 제일 규모가 큰 부분은 소위 'lock box'에서 전환된 ARC이며 그 다음으로 POP(Point of Purchase)방식이 차지하였고 최근 새롭게 등장한 BOC(Back-Office Conversion) 방식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였다.

마지막으로 Fedwire을 통한 자금결제의 증가를 들 수 있다.[4] 이 시스템은 상업적 자금결제에 주로 이용되지만 자금결제방식은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이다. 주로 현금집중지급(cash concentration payment), 다른 금융기관 및 정산 기관의 결제, 연방 조세지급 그리고 연방구매 및 판매자금결제에 주로 이용된다.[5] 동 시스템의 이체 1건당 이체금액이 1996년에 3백만 달러 정도였는데 2006년 4백 3십만 달러, 2년 후인 2008년에는 5백 7십만 5천 달러를 기록하면

2) 수표결제에서 전자결제로 전환된 규모는 2003년 3억 건에서 2006년에 26억 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매년 2배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건당 평균금액은 2003년 미화 187달러에서 2006년 267달러로 증가하였다.

3) 상기의 수단들보다 이용 빈도수는 작지만 이연된 지급(deferred payment) 및 셀 폰(cellular phone)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모바일지급방식도 이용되고 있다.

4) Fedwire의 목적은 글로벌 경제환경하에서 국내 금융의 안정성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거액지급 및 결제업무의 통합, 효율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로 미국정부, 정부관련기구, 정부가 지원하는 기구, 국제기구에 자금이체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5) http ;//www.frbreservice.org/fedwire/index, 09 Feb., 2010.

서 이체규모가 점차 거액화 되어가고 있어 1건당 이체금액이 3백 8십 달러 정도인 자동정산원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6]

한편 한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현금, 어음, 및 수표 등 장표방식에서 전자자금이체, ATM, 전자화폐, 전자어음,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및 전자채권등록 등 전자지급방식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등 지급결제 서비스환경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 심지어 지폐를 대신하던 전자화폐와 우편으로 이루어지던 대금고지 및 납부서비스까지도 전자적으로 대체하는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방식으로 대체되는 등 새로운 전자결제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결제환경의 변화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첫째 결제서비스를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게 제공하고 있다. 과거 결제업무가 금융기관의 메인 컴퓨터와 연결된 폐쇄적인 네트워크형 결제업무였다면 현재는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제업무가 가능한 개방형 결제메카니즘이 도입하고 있다.

둘째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결제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는 선불전자지급회사[7], 결제대행회사[8] 및 결제대금예치금회사[9]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전자결제화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즉 ATM 및 온라인 자금이체 등 특수한 분야에 한정되어 전자결제업무가 수행되던 것이 이제는 예금, 대출, 보험, 전자채권등록 및 증권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화폐, 전자고지, 전자납부, 모바일 뱅킹 등 새로운 전자결제수단들을 이용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제도 구축과정

미국은 한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른 1960년대에 이미 소액 소비자간 결제에 ATM (자동입출금기)기를 이용하다가 1970년에 들어서서는 Fedwire 및 CHIPS와 같은 거액 상업적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금융기관에 도입하여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도구축을 서두

6) http://www.federalserve.gov/paymentsyste/refunds_ann, 02 Feb., 2010.
7)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마이비, (주)엠플온라인, (주)옥션, (주 인터파크, (주)인터파크지마켓, (주)케이티, (주)카드넷, (주)한국스마트카드 등이다.
8) 나이스정보통신(주), 씨제이시스템즈(주), 에스케이텔레콤(주),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마이비, (주)뱅크다운, (주)사이버패스, (주)엠플온라인, (주)옥션, (주)올앳, (주)이니시스, (주)인터파크, (주)케이에스넷, (주) 케이티, (주)케이티프리텔, (주)티지코프, (주)페이게이트, (주)한국사이버결제, (주)한국스마트카드, (주)한국정보통신, 한국버추얼페이먼트(주), (주)LG텔레콤 등이다.
9) (주)다음온캣, (주)엠플온라인, (주)옥션, (주)올앳, (주)인터파크, (주)케이에스넷, (주)인터파크지마캣, (주)페이게이트, (주)한국사이버결제, (주)GS홈쇼핑, (주)LG텔레콤 등이다.

르기 시작하였다. 물론 1968년에 대부진실법(Truth in Lending ACT; TILA)을 제정하여 고객과 금융기관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기 시작하였지만 본격적인 전자결제를 규율하기 위한 시도는 1978년에는 미 의회 산하에 전자자금이체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Electronic Fund Transfer; NCEFT)를 설치하면서 부터이다. 연방의회은 1978년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할 목적으로 연방소비자 신용보호법(Feder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10]에 제9편을 추가하는 형태로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s Transfers Act of 1978)을 제정하였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이 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규정 E」을 만들어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을 이행하고 있다.[11]

또한 미국은 1989년 상업적 거액전자자금이체(wholesale credit transfer)만을 규율하기 위한 미국통일상법전 제4A편(이하 제4A편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즉 제4A편은 주로 기업간 전자자금이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당사자는 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 등이다.[12] 자금이체의 일부분이라도 소비자 거래로서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 의하여 규율된다면 그 자금이체에 관한 제4A편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거액전자자금이체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제4A편과는 별도로 미국은 모든 연방준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금융기관을 규율하기 위하여 운영회람(Operating Circulars), 「규정 J」, 금융가이드(Accounting Guides)를 두고 있다.[13] 특히 금융가이드는 보유계정계산을 위한 계정구조, 계정관리 및 유지, 및 기본 규정을 두어 관련 거래를 규율하고 있다.[14]

한편 한국에서의 전자금융거래의 급격한 성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제정법으로서는 전자금융거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자결제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입법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고객과 금융기관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을 하기 위한 여러 차례 시도[15]끝에 16대 국회회기 기간인 2002년에 입법예고한 기존 법안 중 일부를 수정하여 제17대 국회 회기에서 재정경제부는 재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5년 1월 11일에 동 수정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6년 2월 21일에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후 2006년 4월 6일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6년 4월 28일 법률로 공표되었다.[16] 이에 한국은 전자금융거래법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10) 15 USC §1631(1968) Chapter-2의 §133.
11)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은 2000년에, 「규정 E」는 2003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12) George Brandon and Mary Ann Jenkins, “The Limits of article 4A”,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21, Feb. 2004, pp.99-104.
13) 이병렬, “한국과 미국의 전자결제제도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1권 제1호, pp.30-31.
14) http://www.frbservices.org/regulation, 12 Feb., 2010.
15) 이병렬, 전개논문., pp.31-32.
16)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2008.3, p.6.

3. 손실할당

전자결제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당사자간의 책임관계에서 위험 및 손실할당의 분기점은 지급지시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의 문제와 해당 지급지시를 수신한 금융기관 및 중계은행이 고객과 합의한 절차에 따라 지급지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는지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17] 따라서 전자결제과정에서의 위험은 지급지시를 발행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즉 정당한 계정보유자에 의한 수권된 지급지시라 할지라도 지급지시의 발행 및 이행상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수권되지 않은 무권한 고객이 지급지시를 발행하거나 수신한 지급지시를 은행이 정당한 절차 없이 이행함으로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전자결제과정에서 모든 위험은 고객이 해당시스템에 접촉하는 시점부터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과 책임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고객의 책임, 둘째 고객이 개시하는 전자자금이체의 성격과 형태, 셋째 선수권 된 자금이체를 중지시킬 고객의 권리, 넷째 전자자금이체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영수증을 수취할 고객의 권리, 다섯째 전자자금이체법에서 제시하는 착오해결규정 및 고객의 권리 요약, 여섯째 고객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일곱째 어떤 환경하에서도 금융기관은 제3자에게 금융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고객의 계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할 것이라는 사실, 여듧째 전자자금이체서비스이용료에 대하여 고객에게 통지, 아홉째 *Spain v. Union Trust*,사건[18]에서처럼 전자자금이체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책임관계발생은 어떤 전자자금이체가 일어났는지에 관계없이 전자자금이체가 발생한 계정이 고객이 개설하였다는 사실에만 기초하여 발생된다.

Ⅲ. 손실할당에 따른 은행의 책임

1. 착오로 인한 책임 분담

1) 착오의 정의 및 유형

위험할당의 첫 번째 분기점인 지급지시의 착오(error)에 대한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우

17) Lary Lawrence and Bryan D. Hull, “Payment System”, Chapter 13 Electronic Fund Transfer Act(EFTA) and Regulation E Ⅳ. Error Resolution Procedures, November 2009, pp.1-2.

18) 674 F. Supp. 1496 (D. Conn. 1987).

선 미국의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서는 착오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고객의 계정으로부터 출금착오 또는 고객의 계정에 입금착오[19], 둘째 정기계산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할 전자자금이체과정의 내용누락[20], 셋째 금융기관의 전자자금이체의 컴퓨터 계산 및 부기착오[21], 넷째 전자터미날로부터 고객의 계정으로 부정확한 입금[22], 다섯째 고객의 계정으로 선수권 된 자금이체[23] 및 「규정 E」에서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전자자금이체, 여섯째 고객의 계정잔고에 대한 일상적인 조회, 일곱째 조세목적이나 기록을 보관할 목적이 아닌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 및 문서의 복사요청은 전자자금이체에서 착오에 해당된다.[24]

그러나 접근장치를 분실하였다는 사실은 착오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무권한 전자이체에 속하기는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자금이체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무권한 거래를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서는 착오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25]

또한 미국의 제4A편에서는 지급지시의 착오를 지급지시를 전송함에 있어 원래 의도한 내용과 상이한 지급지시를 전송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26]그리고 착오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27] 첫째 이중 지급지시, 둘째 과다금액 지급지시, 셋째 과소금액 지급지시, 넷째 수익자 지정 착오 등이다.

한편 한국의 전자자금융거래법에서는 착오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28] 그러나 착오의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다만 착오해결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착오해결과정에서 책임

미국 및 한국의 제도에서는 동일하게 착오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서는 2가지 기준의 충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금융기관이 만약 착오의 해결 및 정보요청을 받았다면, 제한된 시간

19) 15 U.S.C.A. § 1693(f)(2); 12 C.F.R. § 205.11(a)(1)(ⅱ).
20) 15 U.S.C.A. § 1693(f)(3); 12 C.F.R. § 205.11(a)(1)(ⅲ).
21) 15 U.S.C.A. § 1693(f)(4); 12 C.F.R. § 205.11(a)(1)(ⅳ).
22) 15 U.S.C.A. § 1693(f)(5); 12 C.F.R. § 205.11(a)(1)(ⅴ).
23) 12 C.F.R. § 205.11(a)(1)(ⅵ).
24) 15 U.S.C. § 1693(f)(6); 12 C.F.R. § 205.11(a)(1)(ⅶ), (a)(2)(ⅰ),(ⅱ).
25) 12 C.F.R. Pt 205, Supp I, Comment 11(a)-3.
26) U.C.C. §4A 205.
27) U.C.C. §4A 207.
28)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8호.

이내에 그 요청에 대응하여야한다. 둘째 만약 고객이 착오라고 주장하지 않고 전자자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한 계정으로 출금 및 입금여부를 확인하는 금융기간에 접근한다면 착오해결시스템은 적용되지 아니한다.[29]

착오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서는 60일 통지규칙을 적용하여 착오의 발견과 해결을 위하여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즉 금융기간이 이체서류, 정기계산서의 전송 및 사전수권서를 통지한 후 60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착오의 통지를 받은 경우, 착오를 조사하여 조사 및 결정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 및 우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0] 만약 착오해결절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착오의 통지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착오의 금액을 소비자의 계정에 임시로 재 이체하고, 그 조사를 종결하거나 착오발생여부의 결정을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객은 착오조사의 연장기간 중에 임시로 재 이체된 금액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31] 만약 금융기관이 착오발생여부를 조사한 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착오조사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내에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32]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Bisbey v. District of Columbia National Bank 사건[33]에서 산드라 미스베이(Sandra Bisbey)는 그의 당좌계정에서 뉴욕생명보험회사에 지급할 9월분 보험료를 이체할 것을 콜롬비아 국립은행(Columbia National Bank)에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계정에 충분한 자금이 부족하여 어떠한 자금이체도 발생하지 않았다. 10월에 뉴욕생명보험회사는 미스베이의 계정에서는 9월과 10월분의 보험료를 동시에 출금하였다. 미스베이는 9월에 그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잊어버리고 은행이 10월에 착오로 2개월분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믿었다. 따라서 은행의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편지로 조회하였다. 10일 후 은행직원은 보험료가 이중으로 지급된 사실은 없다고 구두로 설명하였지만 미스베이는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미스베이는 그의 계정에서 2개월분의 보험료가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이 적절히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지역법원과 항소법원은 은행이 전자자금이체의 발생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시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결론을 짓고 은행은 변호사비용과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29) 12 C.F.R. Pt 205, Supp Ⅰ, comment 11(a)-2.
30) EFTA §908(a)(b).
31) Theresa Leming, J.D., Jack K. Levin, J.D., Eric Surette, J.D., Lisa A. Zakolski, J.D., “Consumer and Borrower Protection”, American Jurisprudence Second Edition, May, 2009, pp.1-2.
32) 15 U.S.C.A. § 1693(f)(d).
33) 793 F.2d 315 (DC Cir. 1986).

금융기관이 착오가 기술적인 문제이거나 고객에게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착오가 발생한 전자자금이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서면으로 착오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34]를 취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거액 상업적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는 제4A편에서도 착오의 유형과 각 유형에 적합한 당사자들의 책임분담부분에서 자세히 규정해 놓았다. 제4A편에서도 착오를 한 당사자에게 착오에 따른 손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다.[35] 즉 고객이 최초 지급지시의 과정에서 착오를 하였다면 지급지시의 착오로 인한 손실은 고객의 책임이지만 은행이 지급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하였다면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6] 따라서 제4A편에서 은행이 범하기 쉬운 이행오류 및 그에 따른 책임분담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객이 지급지시한 금액보다 많은 다액 및 이중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초과금액에 대하여 반환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원지시인이 지급지시한 금액보다 적은 소액이행의 경우에는 은행은 수익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익자지정의 착오의 경우는 고객은 지급지시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이미 잘못 지급지시를 이행한 금융기관은 수익자로부터 반환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37]또한 전자금융당사자인 원지시인과 수신은행은 착오발견을 위한 그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확립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보안절차에 따라 지급지시의 이행여부에 따라 착오발견을 위한 책임분담이 달라질 수 있다.[38]

따라서 미국의 제도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착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착오해결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놓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한국은 전자결제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의 유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함이 부족하고 또한 착오해결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규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에 비하여 구체성이 부족하다.

한편 한국의 제도에서는 미국과 달리 착오발견 및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지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착오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39]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착오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

34) 15 U.S.C.A. § 1693(f).

35) 제4A편에서 수신은행이 범하기 쉬운 이행착오 및 그에 따른 책임분담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객이 지급지시한 금액보다 많은 다액 및 이중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초과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원지시인이 지급지시한 금액보다 적은 소액이행의 경우에는 수신은행은 수익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익자지정의 착오의 경우는 원지시인은 지급지시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이미 잘못 지급지시를 이행한 금융기관은 수익자로부터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UCC §4A-303.

36) UCC §4A-205 comment 1.

37) UCC §4A-303.

38) UCC §§4A-207(c)(2) & (d)(2).

39)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1).

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0] 또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의 착오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착오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41] 따라서 한국의 제도에서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하기 위한 시간적 제한기간, 착오의 유형 및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고객이 착오정정을 위한 기간규정도 없이 다만 착오발생 후 금융기간이 고객에게 통지할 기간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즉 미국의 제도보다 고객보호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오히려 고객과 금융기관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무권한 자금이체에 의한 책임분담

1)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의 정의 및 유형

전자자금이체는 컴퓨터전산망을 이용하여 지급지시가 전송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물리적인 사전 확인 없이 이행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고객으로써 수권되지 않은 자에 의한 무권한 전자자금이체가 발생 될 수 있다.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는 이행과정에서 의도적인 인간의 직권남용, 의도를 가장한 우연한 실수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작동불량 그리고 *Continental Airlines v. Boatmen's National Bank* 사건[42]에서와 같이 비록 시작은 착오에 의한 것이지만 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도 있다. 전자자금이체에서 사기행위는 지급지시의 착오보다 당사자에게 더욱 빈번하고도 심각한 자금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관련법제에서도 당사자간의 책임을 분담시키기 위하여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8년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에서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unauthorized electronic transfer)는 전자자금이체를 개시할 실제 권한 없이 고객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객의 계정에서 개시된 전자자금이체 및 고객이 그와 같은 전자자금이체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받지 않은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43]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순히 컴퓨터에 무권한적으로 접근하는 행위[44]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무권한 접근

40)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2).
41)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3).
42) 13 F.3d 1254, 1255-57 & n.2 (8th Cir. 1994).
43) 15 U.S.C.A. § 1693c(a)(1).
44) 무권한적으로 컴퓨터에 접근하는 한다는 것은 첫째, 컴퓨터의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접근하거나 또는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접근하는 것 둘째, 접근하는 것은 허락 받았지만 허락의 범위를 넘

의 판단은 의도성여부에 있다. 둘째, *United States. v. Taylor* 사건[45], *People v. Versaggi* 사건[46], 및 *State v. Joyner* 사건[47]에서 알 수 있듯이 무권한적으로 다른 고객의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48] 그러나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서는 다음의 경우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9] 첫째, 만약 수권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 이행한 전자자금이체를 고객이 금융기관에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둘째 고객이 그의 계정으로 고객이외의 다른 사람이 제공한 카드, 아이디(ID), 다른 접근수단을 가지고 개시한 전자자금이체, 셋째 고객과 제휴하여 행동한 사람 또는 고객이 사기성이 있는 의도를 가지고 개시한 전자자금이체, 넷째 금융기관이 이행한 지급지시의 착오 등이다.[50]

또한 제4A편에서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를 전송자가 누구인지 입증되지 않은 자로부터 발생된 자금이체로 규정하고 있다.[51] 하지만 제4A편에서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의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의 전제조건으로서 은행과 고객간에 설립하기로 합의한 보안절차의 준수여부에 따라 무권한 거래판단기준을 삼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보안절차도 상업적 상당성(commercially reasonable)과 지급지시의 수권여부에 따라 무권한 거래판단기준도 달라진다.

한편 한국의 제도에서도 무권한 거래에 관한 정의나 유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금융기관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접근매체의 위조 및 변조 그리고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하여 무권한 거래는 고객이외의 다른 사람이 의도성을 가지고 고객의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행위라고 추정할 수 있다.

2) 무권한 전자자금이체해결과정에서의 책임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서도 고객은 카드 및 접근수단을 전자이체에 필요한 카드 및 접근수단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해당고객의 계정으로 입금된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52] 만약 카드, 아이디, 다른 접근수단을 제공한 경우 해당카드, 아이디,

---

어서는 컴퓨터의 이용을 의미한다.

45) 945 F.2d 1050 (8th Cir. 1991).

46) 83 N.Y.2d 123, 629 N.E.2d 1034 (N.Y. 1994).

47) 759 S.W.2d 422 (Tenn. Crim. App. 1987).

48)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유형이외에도 컴퓨터 서비스절도, 내부공모, 자금세탁 등이 존재한다.

49) 15 U.S.C.A. § 1693a(11).

50) Paul M. Coltoff, John Glenn, Glenda K. Harnad, Eric Larrsson, Lucas Martine, Eric Mayer, Tom Muskus, Eric C. Surette, Elizabeth Williams, “Bankins and Banking”, Corpus Juris Secundum 9, June 2009, p.3.

51) U.C.C. §4A-202.

52) Paul M. Coltoff, John Glenn, Glenda K. Harnad, Eric Larrsson, Lucas Martine, Eric Mayer, Tom Muskus, Eric C. Surette,

다른 접근수단의 이용자가 서명, 사진, 지문, 전자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확인을 하였다면 수권된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53] 은행은 그의 고객이 무권한 이체로 발생한 손실금액이 미화 50달러이내이거나 무권한 이체사실을 인지한 후 제2영업일이내 금융기관에 통지하기 전 또는 무권한 전자이체를 인지하기 전 이미 이행된 이체금액 그리고 고객의 계정에서 이행된 무권한 전자자금이체가 유효할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 및 대리인이 그와 같은 정보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관련정보를 제시할 것을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면 은행이 무권한 거래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객이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를 인지한 후 제2영업일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손실금액이 미화 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그가 이행한 전자자금이체가 수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Ognibene v. Citibank, NA*사건[54]에서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무권한 이체에 관한 입증의 최초부담은 고객에게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이 입증할 내용은 고객이 무권한이체 철회여부, ATM기에서 고객에게 철회할 것을 수권하였는지 여부, 철회로부터 이익발생여부, 이체를 개시하는 고객에게 개인 아이디가 아닌 단지 그의 카드를 제공함으로서 고객은 그의 계정에 접근수단을 제시하였는지의 여부 등이 포함된다.

한편 미국의 제4A편에서 원지시인과 수신은행은 무권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안절차를 확립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그리고 *Manufacturers Hannover Trust Co. v. Chemical Bank* 사건[55]*Security Pacific. International Bank v. National Bank* 사건[56]에서 알 수 있듯이 무권한이체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신은행은 전자자금이체를 이행한 이후 그 결과를 원지시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57] 따라서 지급지시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신은행이 원지시인을 포함한 전송자에게 조회 및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수신은행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원지시인이 지급지시의 이행과 관련하여 먼저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신은행은 원지시인에게 이체의 현황과 이행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지시인의 법적 대리인과 상속인에게도 존재한다. 심지어 원지시인과 수익자가 동일한 은행에 계정을 두고 있는 이체의 경

Elizabeth Williams, “Bankins and Banking”, Corpus Juris Secundum 9, June 2009, pp.1-2.

53) 15 U.S.C.A. § 1693g(a).

54) 112 Misc. 2d 219, 446 N.Y.S.2d 845 (N.Y. City Civ. Ct. 1981).

55) 559 N.Y.S. 2d 704, 708-9(App. Diu. 1990), appeal denied, 568 N.Y.S. 2d 15 (1991).

56) 772 F. Supp. 874, 867-7(W.D. Pa. 1991).

57) UCC §4A-505.

우에도 지급지시의 금액이 수익자에게 이체지급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보고를 하여야 한다.[58]

한편 한국의 제도에서도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무권한 거래에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및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59] 즉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사업자가 고의 및 과실을 범한 경우에만 과실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과 금융기관당사자 쌍방이 과실이 없을 경우에도 접근매체의 위조 및 변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금융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이 아닌 고객에게 과실이 있거나 고객에게 과실이 없는 무권한 거래 및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60]전자금융사업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Ⅳ. 은행의 면책

1. 고객의 통지의무태만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 및 「규정 E」에서도 은행이 고객에게 전송한 지급지시의 이행결과에 따른 주의 및 통지의무를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제공한 정기명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본인의 거래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은행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객의 책임이 부담하여야 한다.

Thoreson v. Citizens State Bank 사건[61]에서 주립시민은행(Citizens State Bank)은 리스 엘리베이타(Leeds elevator)사의 관리인의 아내가 위조한 서명으로 출금한 내용이 포함된 정기명세서를 엘리베이터의 소유자인 데어선(Thoreson)에게 발송하였다. 법원은 데어선이 주간 은행거래명세서에서 위조수표의 출금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신속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 내용을 은행에게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한 수표출금액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58) 이병렬,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62-65.
59)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1).
60)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4).
61) 294 N.W.2d 397 (N.D.1980).

판시하였다.

또한 은행도 고객에게 전자자금이체가 이행된 고객의 계정상황 및 지급지시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은행은 이체금액, 이체일 그리고 전자자금이체의 수익자의 신원 등과 관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계정변동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Ratner v. Chemical Bank New York Trust Company* 사건[62]에서 원고인 뉴욕신탁은행(New York Trust Company)은 고객인 라티너(Ratner)에게 마스터카드 약정하에서 이번 달 정기명세서를 발송하면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비용에 따른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정기명세서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피고은행의 고지의무의 위반이 의도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은행의 면책여부이다. 이에 법원은 뉴욕신탁은행이 명세서에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변호인의 권고에 따라 선의로 어떤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뉴욕신탁은행은 면책된다고 판시하였다. 은행의 통지의무의 태만이 선의의 착오에서 발생되었을 경우 은행이 의도적인 위반이 아니라는 관련된 증거를 입증한다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은행이 이체서류, 정기계산서의 전송 및 사전 수권된 전자이체에 대해서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한 이후 60일 이내에 고객이 지급지시의 착오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급지시의 착오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 은행은 면책된다. 이 사실은 *Pickman v. Citibank* 사건[63]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고객이 무권한 전자자금이체 및 카드 및 접근수단의 분실을 고객이 인지한 후 제2영업일이내에 은행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은행은 상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4] 만약 고객이 제2영업일이내에 보고할 수 없는 환경 즉, 장기여행 중 및 입원일 경우, 에는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이 통지기간의 지나친 연장을 원한다면 그 이유의 입증책임은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어 은행은 이 경우에도 면책된다. 즉, *Kruser v. Bank of America NT&SA*사건[65]에서도 법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은행명세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고객이 통지기간의 확장에 대한 정상 참작상황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고객의 책임이라고 판시하였다.

제4A편에서도 동일하게 원지시인에게 수신은행이 발송한 전자자금이체결과에 따른 주의

62) 329 F.Supp. 270 (S.D.N.Y. 1971).
63) 110 Misc.2d 838, 443 N.Y.S. 2d 43 (N.Y.Civ.Ct.1981).
64) 15 U.S.C.A. § 1693g(a), referring to 15 U.S.C.A. § 1693d.
65) 281 Cal. Rptr. 463 (Cal. App. 5th Dist. 1991).

및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만약 원지시인이 주의 및 통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수신은행에게 면책을 허용하고 있다.[66] 이 경우의 손실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원지시인은 이자지급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가 없다. 제4A편에서는 원지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특정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원지시인에게 통지된 은행명세서를 수신한 이후 90일 이후 원지시인이 은행거래명세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무권한 이체결과 출금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은행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 거래가 연방준비은행의 Fedwire을 통하여 전송되었다면 원지시인은 30일 이내 거래명세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67] 다음으로 원지시인은 수신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의 이행에 관한 은행의 거래명세서와 관련된 통지를 수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자금이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의 계정에서 출금된 원금을 상실할 수 있다.[68]

한편 한국의 제도에서도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사업자에게 무권한 거래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전자금융거래의 결과를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관련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제도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69] 그리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사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법에서는 아쉽게도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수취한 거래결과에 따른 주의 및 통지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전자자금이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서 잘 알 수 있다.

2. 상업적 상당성을 갖춘 보안절차에 따른 이행

제4A편에서는 무권한 자금이체에 따른 위험할당조치로서 수신은행과 고객이 합의하에 설립한 보안절차에 따라 그가 수신한 지급지시를 이행하였다면 비록 무권한 지급지시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수신은행은 면책된다. 즉 은행이 보안절차에 따라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무권한 이체 결과에 따른 손실을 은행이 부담하고 합의한 보안절차에 따라 전자자금이체를 이행한 경우에 은행은 면책된다.[70] 보안절차 없이 무권한적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신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자금을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안절차에 따

66) UCC §4A-304.
67) Regulation J §8(c).
68) UCC §4A-505.
69)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
70) Peter A. Alces, *cases, problems and materials on PAYMENT SYS- TEMS,* West Publishing Co., 1996, pp. 562-563.

라 이행한 수신은행이 그 지시가 권한 있는 자가 전송한 지시라는 것을 입증하고 무권한 지급지시에 관하여 면책되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보안절차는 상업적으로 상당성을 가져야 한다.[71] 보안절차가 상업적으로 상당성의 판단기준은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하다.[72] 둘째, 수신은행은 무권한 지급지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원지시인에게 지급지시를 이행하기 전에 원지시인과 수신은행이 체결한 약정과 일치한 지급지시를 이행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면책된다.[73]

한편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사고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그리고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면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4] 즉 이용자에게 고의 및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전자금융약관에 면책규정을 둔 경우에 전자금융사업자는 면책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무과실인 경우에는 일반거래 즉 소비자거래인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부담하고 법인거래인 경우에는 전자금융사업자가 주의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최근 지급결제시스템의 추세가 전자결제화로 급 진전되면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2003년에 입법하여 2004년 10월'21세기법'까지 발효시키면서까지 자동정산원을 통한 전환된 수표(Converted check)의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등 국가정책적 측면에서도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금이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경제거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결제업무도 자연스럽게 폭주하게 되어 금

71) UCC §4A-202(b)(i).

72) 보안절차가 상업적으로 상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수신은행은 지급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통제수단을 별도로 배치시켜야 한다. 둘째 수신은행은 그가 사용한 보안절차를 고객이 승인하고 선호한다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수신은행은 보안절차에 따라 지급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지시인의 서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Bejamin Wright,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Little, Brown and Company,* Little, Brown and company, 1993 Supplement, pp.171-173.

73) UCC §4A-203 comment 3.

74)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2).

융기관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그들의 결제시스템을 전환시키기를 원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현상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으로 자금이동의 증가는 고객과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간의 분쟁을 야기를 시켰으며,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결제시스템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해당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관련법을 일찍 제정하였다. 물론 본 고의 연구대상인 한국과 미국에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한국은 2007년에'전자금융거래법과 시행령'이 제정하였으며 미국은 1978년과 1989년에 전자자금이체법과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을 제정하여 소비자거래와 상업적 거액거래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 분석한 양국의 제도에 표출된 은행의 책임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분쟁의 주 원인은 지급지시의 착오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주요쟁점은 어떤 행위를 착오라고 인정하느냐의 문제와 착오해결과정이다. 미국의 소비자 전자이체를 규율하는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과 거액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는 제4A편에서는 착오의 정의, 착오유형, 착오해결과정 절차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착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착오의 유형과 착오해결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간단히 규정해 놓았다. 또한 미국처럼 착오의 유형과 관련된 당사자의 책임분담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고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이체서류 및 정기명세서를 확인하고 언제까지 착오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간제한규정이 없어 당사자간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객이 그의 금융거래에 대한 이이 신청을 위한 통지기간을 명시하여 금융기간의 책임구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과 미국은 무권한 거래에 대한 책임분담기준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법은 무권한거래의 정의 및 유형을 비교적 명쾌하게 명시해놓고 있다. 또한 무권한 거래일지라도 은행이 면책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법에서는 무권한 거래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이용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은행은 면책된다고 규정해놓고 있을 뿐이다. 물론 중과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약관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중과실과 경과실의 범위를 법리보다는 은행실무에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그리고 경과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따라서 은행과 고객간에 책임분담경계가 미국보다 명확하지 않아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수단으로서 법원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회적 비용이 증대시킬 수 있다.

셋째 미국은 은행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하여 은행이 고객과 합의한 보안절차에 따라 전자자금이체를 이행하였다면 지급지시의 착오 및 무권한 거래에 대해서 은행에게 고객이 일반인이던 법인이던 동일한 면책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보안절차에 일치한 전자자금이체임을 입증할 책임은 금융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제도에서도 보안절차에 따른 금융기관의 면책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에서 보안절차에 따른 면책규정은 고객이 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용자가 일반인 고객의 경우에서는 은행의 면책규정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미국의 제도에서 소액 소비자간 거래를 규율하기위한 법과 거액 상업적인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단일 체제로서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참 고 문 헌

김자봉, “전자금융거래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6.

김제완,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의 법적 성격,” 「상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06.8.

김인석, “전자 금융사고분석을 통한 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보경영공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집, 2008.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2008.

소현철, “전자금융거래법시행에 따른 감독방향 및 향후 추진과제”,「신용카드」, 제40호, 여 신금융협회, 2007.

이병렬,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2.

_____, “한국과 미국의 전자결제제도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1권 제1호, 2009.3.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정대익, “무권한 전자지급시 위험분배원칙-전자금융거래법의 제9조의 비판적 검토”,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

정찬형,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Vol.51, 2008.

최해범·이병렬, “국제금융거래에서 무권한 행위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8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한국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한정미,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원칙",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제3호, 2007.

Alces, Peter A. *Payment Systems, West Publishing Co*., 1996.

Brandon George and Jenkins Mary Ann, "The Limits of article 4A",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21, Feb. 2004.

Croal, M & Weikart, E.,"On the Elevator: Electronic Funds Transfer", *Credit Union Management*, Vol.31, No.7, 2008.

Darmstadter, H., "Wired: Problems with Electronic Funds Transfer Agreement", *The Banking Law Journal,* Vol.221, No.7, 2007.

Dole. Richard F, "Receiving Bank Liability for Errors in Wholesale Wire Transfers", *Tulane Law Review,* Vol. 69, March 1995.

Geva Benjamin, "Recent UCC Article 4A Jurisprudence: Critical Analysi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 Vol. 36, Fall 2003.

_____, *The Law of Electronic Funds Transfers*, Mattew Bender & Company, Inc., 2003.

_____, "Recent UCC Article 4A Development, 2003-2005",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38, No. 1, 2005.

Lary Lawrence and Bryan D. Hull, "Payment System", Chapter 13 Electronic Fund Transfer Act(EFTA) and Regulation E Ⅳ. Error Resolution Procedures, November 2009.

Paul M. Coltoff, John Glenn, Glenda K. Harnad, Eric Larrsson, Lucas Martine, Eric Mayer, Tom Muskus, Eric C. Surette, Elizabeth Williams, "Bankins and Banking", *Corpus Juris Secundum* 9, June 2009.

Theresa Leming, J.D., Jack K. Levin, J.D., Eric Surette, J.D., Lisa A. Zakolski, J.D., *Consumer and Borrower Protection*, American Jurisprudence Second Edition, May 2009.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of 1978 & 「규정 E」.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4A(2008-2009).

http://www.federalreserve.gov, 01 Feb., 2010.

http://www.federalreserve.gov/pubs/buiietin, 07 May., 2008.

http ;//www.frbreservice.org/fedwire/index, 09 Feb., 2010.

http://www.frbservices.org/regulation, 12 Feb., 2010.

http://www.law.cornell.edu/UCC/4A/, 10 Feb., 2010.